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2023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하여야 할 최소 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2023년 11월 10일

1. 고시 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

2. 관련 제도 및 기준

- (제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종류별·톤급별 화물차 1대당 연평균운송매출액)에 소속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운송하여야 함
- (기준) 2023년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은 차종·톤급별 고시되는 2022년 화물차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함

3. 2023년도 적용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단위: 백만 원)

톤급		1톤 이하	3톤 미만	5톤 미만	8톤 미만	10톤 미만	12톤 미만	15톤 미만	20톤 미만	20톤 이상
유형/차종										
일반형		31.0	35.4	51.1	58.3	65.1	71.9	78.8	85.6	92.4
덤프형		29.0	37.6	46.1	54.6	63.1	70.0	76.9	83.9	90.8
밴형		45.2	55.8	66.4	77.0	87.6	92.8	98.0	105.5	113.0
특수 용도형	냉장,냉동차	53.2	61.8	70.4	78.9	87.5	96.1	104.7	113.2	121.8
	곡물,사료운반	67.1	77.3	87.6	92.4	97.3	102.1	107.0	116.7	136.1
	유조차	34.4	43.8	53.3	62.7	72.1	81.5	90.9	100.4	111.6
	탱크로리	57.2	66.2	73.7	78.4	83.2	102.1	108.2	114.3	129.5
	기타	40.2	57.6	63.6	69.7	83.0	96.3	109.5	114.9	128.2
특수 자동차	견인형	48.0	60.4	72.8	85.2	96.2	107.1	118.1	129.0	140.0